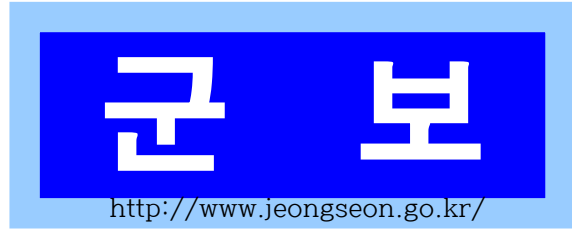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383호 2016. 3. 2.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6-135호 정선군 국내·외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 정선군 공고 제2016-165호 2016년도 정선군 예산분야 지방재정공시 5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4,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6-135호

「정선군 국내·외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국내·외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의 교류활성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정선군 국내·외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자매결연 주최 및 대상 규정 : 지방자치법 제2조 (시·군·구 이상)
-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의 내용 정의

나. 결연 및 사전검토(안 제4조 및 제5조)

- 결연 대상 선정
- 사전 검토 사항(지역여건의 유사성, 우호증진 가능성, 실익의 기대성, 교류의 필요성 등)

다. 의회 동의(안 제6조)

- 국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취소 시 사전 의회 동의

라. 교류사업 지원(안 제9조)

- 결연 후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민간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우)233-70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정선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560-2189
- 팩스: 033-560-2590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국내·외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과 국내·외 자치단체 간의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 및 국내 교류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 도시 중 우리나라의 시·군·구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약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이하 "합의문"이라 한다)의 체결을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자치단체 간의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이하 "결연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결연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발전과 정선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상호 공동발전과 우호협력 증진이 가능한 국내·외 자치단체와 결연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연등의 대상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 상호발전 잠재력이 있는 자치단체로 선정해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① 군수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결연등을 제의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6조(의회 동의) 군수는 국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체결·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결연등의 체결) ① 결연등은 양 자치단체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각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결연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방문 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양 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국외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은 우호교류 등 상호 합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읍·면의 결연등) ① 군 소속 읍·면의 국내 결연등에 대한 사항은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를 준용한다.

② 읍·면의 장은 다른 읍·면·동과 결연등을 체결·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교류사업 지원) ① 군수는 결연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② 군수는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결연 자치단체와의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결연 등의 취소) 군수는 국내·외 결연등 자치단체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결연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자치단체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결연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체결된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정선군 공고 제2016-165호

2016년도 정선군 예산분야 지방재정 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동법시행령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방법)에 의거 「2016년도 정선군 예산분야 지방재정공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정 선 군 수

2016년 정선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 ◆ 우리 군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3,675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4,058억원)보다 383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52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157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66억원입니다.
- ◆ 우리 군의 ’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5.8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4.53%입니다.
- ◆ 우리 군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2억원의 흑자(적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살림규모는 동종자치단체 보다 낮으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동종단체보다 높고 통합재정수지 역시 12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운영이 상당히 건전하다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이대성(033-560-2220)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정선군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367,549	367,862	△313	405,841	384,103	21,738
	세 출 예 산	367,549	367,862	△313	405,841	384,103	21,738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25.81	23.47	2.34	16.44	15.58	0.86
	재정자주도[당초]	64.53	61.66	2.87	62.12	61.53	0.59
	통합재정수지[당초]	1,225	3,786	△2,561	2,739	2,831	△93
재정운영계획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 산 편 성 기 준 별 운 영 상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 영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단체 : 군-(2)(연천군, 영동군, 괴산군,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 고창군, 부안군, 화순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의성군, 울진군,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함천군)

※ 유사단체 분류 : 불임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정선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67,549	290,928	8,744	28,032	39,84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17,077	324,025	324,837	367,862	367,54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8,699	100.00%	259,633	100.00%	260,667	100.00%	290,402	100.00%	290,928	100.00%
지 방 세	29,403	11.82%	27,997	10.78%	29,202	11.20%	30,001	10.33%	30,997	10.65%
세외수입	26,419	10.62%	31,421	12.10%	20,050	7.69%	38,157	13.14%	44,086	15.15%
지방교부세	104,800	42.14%	103,300	39.79%	104,300	40.01%	107,800	37.12%	109,540	37.65%
조정교부금 등	2,900	1.17%	2,900	1.12%	3,100	1.19%	3,100	1.07%	3,100	1.07%
보 조 금	85,177	34.25%	94,015	36.21%	95,945	36.81%	96,204	33.13%	87,484	30.07%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8,070	3.10%	15,140	5.21%	15,720	5.40%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정선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67,549	290,928	8,744	28,032	39,84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17,077	324,025	324,837	367,862	367,54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8,699	100%	259,633	100%	260,667	100%	290,402	100%	290,928	100%
일 반 공 공 행 정	24,845	10.0%	24,765	9.5%	22,219	8.5%	20,519	7.1%	21,884	7.5%
공공질서 및 안전	8,100	3.3%	14,115	5.4%	13,490	5.2%	14,787	5.1%	17,673	6.1%
교 육	4,575	1.8%	4,593	1.8%	4,253	1.6%	5,029	1.7%	3,581	1.2%
문 화 및 관 광	14,001	5.6%	17,682	6.8%	13,681	5.3%	21,685	7.5%	27,969	9.6%
환 경 보 호	12,792	5.1%	15,948	6.1%	12,010	4.6%	20,750	7.2%	16,151	5.6%
사 회 복 지	34,607	13.9%	36,895	14.2%	41,641	16.0%	48,729	16.8%	54,063	18.6%
보 건	4,477	1.8%	4,180	1.6%	12,141	4.7%	6,075	2.1%	7,199	2.5%
농 립 해 양 수 산	37,939	15.3%	39,293	15.1%	39,569	15.2%	40,236	13.9%	42,476	14.6%
산업·중소기업	2,418	1.0%	1,335	0.5%	1,332	0.5%	2,883	1.0%	5,801	2.0%
수 송 및 교 통	8,431	3.4%	8,428	3.3%	7,853	3.0%	7,767	2.7%	5,500	1.9%
국토 및 지역개발	55,941	22.5%	47,523	18.3%	44,643	17.1%	52,352	18.0%	35,301	12.1%
과 학 기 술	0	0.0%	0	0.0%	0	0.0%	0	0.0%	0	0.0%
예 비 비	2,766	1.1%	3,252	1.3%	2,912	1.1%	3,906	1.3%	5,196	1.8%
기 타	37,808	15.2%	41,625	16.0%	44,923	17.2%	45,683	15.7%	48,133	16.5%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21,049	421,907	423,317	426,823	428,555	2,121,651	0.40%
자 체 수 입	80,290	81,915	80,670	82,085	80,685	405,645	0.10%
의 존 수 입	263,521	271,980	272,916	276,931	275,491	1,360,839	1.1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7,239	68,012	69,731	67,807	72,379	355,168	△1.60%
세 출	421,049	421,907	423,317	426,823	428,555	2,121,651	0.40%
경 상 지 출	100,047	101,832	103,162	106,648	107,436	519,125	1.80%
사 업 수 요	321,002	320,075	320,155	320,174	321,119	1,602,525	0.0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정선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377,169,488	377,884,263	714,775	0.19
정선군	367,861,752	367,549,115	△312,637	△0.09
정선군시설관리공단	6,751,254	7,204,291	453,037	6.29
정선아리랑문화재단	1,985,482	2,658,857	673,375	25.33
정선장학회	571,000	472,000	△99,000	△20.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교육청 예산은 시도만 작성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정선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5.8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1.21 (25.81)	290,928 (290,928)	90,804 (75,084)	200,124 (200,124)	-	- (15,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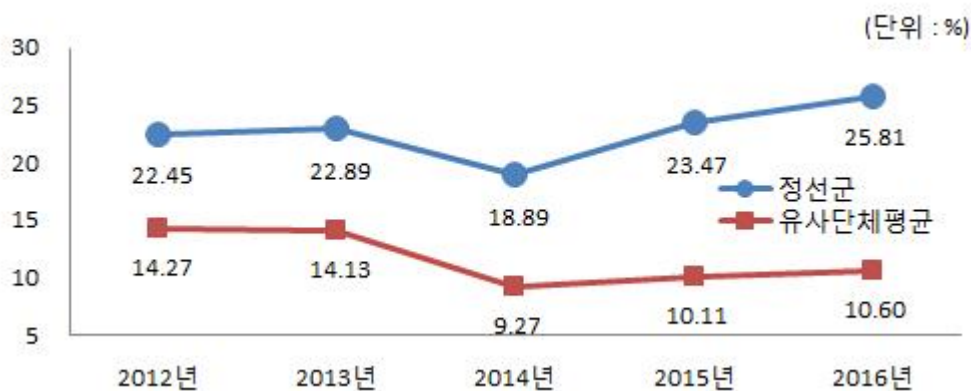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22.45	22.89	21.99 (18.89)	28.68 (23.47)	31.21 (25.81)
최종예산	24.14	23.78	21.98 (15.35)	32.73 (24.04)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강원랜드 입지로 인한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이 높아 유사단체 평균보다 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정선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4.5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9.93 (64.53)	290,928 (290,928)	203,444 (187,724)	87,484 (87,484)	-	- (15,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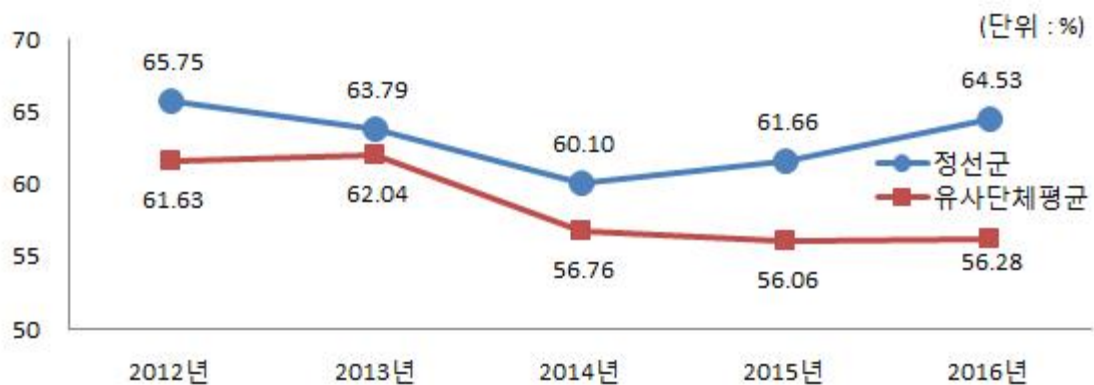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65.75	63.79	63.19 (60.10)	66.87 (61.66)	69.93 (64.53)
최종예산	68.11	66.84	65.94 (59.32)	70.74 (62.05)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군은 강원랜드 입지로 인한 재정자립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의존재원이 동종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재정자립도에 비해 재정자주도의 차이는 적게 나타났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정선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00,957	321,111	140	300	160	21,540	321,271	△20,315	1,225
일반회계	275,208	283,880	140	300	160	15,580	284,040	△8,832	6,748
기타 특별회계	17,589	28,032	0	0	0	5,360	28,032	△10,443	△5,084
공기업 특별회계	8,044	8,744	0	0	0	600	8,744	△700	△100
기 금	116	455	0	0	0	0	455	△339	△339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2,767	△8,184	△8,130	△13,616	△20,315
통합재정수지 2	△1,988	5,816	2,763	3,786	1,225

☞ 2016년도 우리 군의 통합재정수지1은 20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통합재정수지2는 12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당해연도 세입으로는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203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순세계잉여금 215억원을 합할시 지출을 충당하고 12억원이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정선군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6	9,103
여성정책추진사업	3	9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0	5,26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3,742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정선군은 [모델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27,704	3,908	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 원 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908	
세무회계과	임계면사무소 청사앞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50	신규사업
주민생활지원과	거점복지관 운영(흑빛지역아동센터)	65	신규사업
여성청소년과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지원	130	계속사업
여성청소년과	나전중학교 급식시설 확충	200	신규사업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	283	계속사업
수질환경사업소	용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500	신규사업
기획감사실	지역경제 현안사업 타당성 용역	100	신규사업
농업축산과	민물고기 서식환경조성사업	25	신규사업
문화관광과	화암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507	신규사업
문화관광과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	400	신규사업
문화관광과	야생화단지·쿠키체험장 조성	548	계속사업
안전건설과	군도3호선(세대~용탄)도로 확포장공사	400	신규사업
지역경제과	신동 소3-19호선(달동네) 도로 확포장	700	신규사업

4-3.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정선군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 계	18	55	62	149	318,960	317,961	999
기획감사실	1	3	3	6	15,571	14,600	971
자치행정과	1	2	3	8	16,257	13,910	2,347
세무회계과	1	3	3	5	35,665	33,838	1,827
여성청소년과	1	5	7	9	15,264	14,636	628
주민생활지원과	1	5	6	13	36,595	34,140	2,455
민원봉사과	1	3	3	7	802	1,226	△424
환경산림과	1	6	6	17	22,848	24,611	△1,763
농업축산과	1	3	4	18	22,291	22,302	△10
문화관광과	1	3	3	9	22,769	17,863	4,906
지역경제과	1	5	5	10	27,615	34,264	△6,649
안전건설과	1	3	3	5	22,961	22,330	631
도시건축과	1	4	4	12	23,052	24,567	△1,515
동계올림픽지원단	1	1	3	5	5,325	3,927	1,399
농업기술센터	1	1	1	7	5,827	4,987	840
보건소	1	3	3	9	7,377	6,249	1,128
수질환경사업소	2	4	4	8	32,565	38,233	△5,668
의회사무과	1	1	1	1	620	633	△13
읍면	-	-	-	-	5,555	5,588	2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5.81	64.53	18.58	32.16	48.79	48.2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2,800	52,800	-
	부단체장	36,300	36,300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8,314	205,841	△22,473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동경비	39,600	39,600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1,640	41,640	-
	의원국외여비	17,500	17,500	-
지방보조금		12,976,600	11,416,373	△1,560,22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45,060	645,060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72,000	972,000	-
공무원 일·숙직비		325,640	325,640	-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시책업무추진비와 지방보조금은 행정자치부 기준액 미만으로 편성하여 차액이 마이너스(△)로 발생하였습니다.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3,424	△762

-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 페널티

❖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4,197	3,424
인건비 절감	0	16
지방의회경비 절감	38	37
업무추진비 절감	53	44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866	1,137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297	1,825
지방청사 관리.운영	875	365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504	△762
지방세 징수율 제고	459	386
지방세 체납액 축소	△293	△490
경상세외수입 확충	△56	△34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408	△144
탄력세율 적용	△202	△170
지방세 감면액 축소	△4	0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5년에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며 우리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5년에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며 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재정성과

5.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I. 재정 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10.08%	5.37%	3.88%
	2.실질수지비율	17.66%	17.78%	12.22%
	3.경상수지비율	74.21%	64.80%	69.76%
	4.관리채무비율	1.93%	3.26%	12.59%
	5.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0.04%	25.19%	66.75%
	6.공기업부채비율	0.07%	7.30%	70.93%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3.79%	-2.54%	-0.82%
II. 재정 효율성	8.자체세입비율	13.71%	7.76%	27.96%
	8-1.자체세입증감률	-3.40%	-1.21%	6.09%
	9.지방세징수율	97.79%	94.70%	97.16%
	9-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97	0.9997	1.0037
	10.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50%	0.61%	2.11%
	10-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6.11%	33.11%	2.94%
	11.경상세외수입비율	4.05%	1.21%	1.92%
	11-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38%	7.51%	4.70%
	12.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66%	0.70%	1.51%
	12-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3.19%	13.24%	-1.96%
	13.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74	0.9939	0.9983
	14.민간이전경비비율	12.38%	12.93%	8.54%
	14-1.민간이전경비증감률	-10.00%	-0.15%	6.09%
	15.출연출자금비율	2.32%	1.62%	2.41%
	15-1.출연출자금 증감률	1.39%	20.99%	-7.46%
	16.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3.41%	5.47%	5.20%
	16-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37.52%	-0.54%	6.77%
	17.인건비 절감 노력도	0.0195	0.0118	-0.0091
	18.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3816	0.2007	0.1313
	19.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142	0.1152	0.2105
	20.행사축제경비비율	0.94%	1.02%	0.43%
	20-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39.05%	-6.37%	-7.59%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

※ 2016년 2월 수시공시 사항으로 금회 공시건과 함께 공시함

❖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실질채무비율	(관리채무-기초자치단체융자금)/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광역만)
6. 현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능력이 높음
7.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8.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 안정성이 높음
9.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 실제수납액/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률)	2014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2.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2014년도기준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음
13.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감률)	2014년말 세외수입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4. 탄력세율적용노력도	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음
15.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짐
16.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7.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임
18. 인건비 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19.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0.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붙임

유사단체 분류 [기초자치단체]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경기 수원시 경기 안산시 충남 천안시	경기 성남시 경기 안양시 전북 전주시	경기 고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경기 화성시 경남 창원시	경기 용인시 충북 청주시 경남 김해시
	시-(2)	경기 의정부시 경기 군포시 충남 아산시 경북 경주시 경남 양산시	경기 평택시 경기 광주시 전북 군산시 경북 구미시	경기 시흥시 경기 김포시 전북 익산시 경북 경산시	경기 광명시 강원 춘천시 전남 여주시 경남 진주시	경기 파주시 강원 원주시 전남 순천시 경남 거제시
	시-(3)	경기 이천시 경기 오산시 충북 충주시 전남 광양시	경기 구리시 경기 하남시 충북 제천시 경북 김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의왕시 충남 서산시 경북 안동시	경기 안성시 경기 과천시 충남 당진시 경남 통영시	경기 포천시 강원 강릉시 전남 목포시
	시-(4)	경기 동두천시 강원 삼척시 전북 정읍시 경북 영천시	경기 여주시 충남 공주시 전북 남원시 경북 상주시	강원 동해시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 경북 문경시	강원 태백시 충남 논산시 전남 나주시 경남 사천시	강원 속초시 충남 계룡시 경북 영주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부산 기장군 경기 가평군 충남 홍성군 전남 영암군 경남 거창군	대구 달성군 강원 홍천군 충남 예산군 전남 무안군	인천 강화군 충북 진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칠곡군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함안군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전남 해남군 경남 창녕군
	군-(2)	경기 연천군 충남 서천군 전남 영광군 경북 울진군	강원 정선군 충남 태안군 전남 장성군 경남 고성군	충북 영동군 전북 고창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하동군	충북 괴산군 전북 부안군 전남 신안군 경남 함양군	충남 금산군 전남 화순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합천군
	군-(3)	인천 옹진군 강원 고성군 전남 보성군 경북 고령군	강원 횡성군 충북 옥천군 전남 장흥군 경북 성주군	강원 영월군 충북 증평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예천군	강원 평창군 전북 순창군 경북 영덕군 경남 남해군	강원 철원군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 경남 산청군
	군-(4)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전북 임실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강원 양구군 충남 청양군 전남 곡성군 경북 청송군	강원 인제군 전북 진안군 전남 구례군 경북 영양군	강원 양양군 전북 무주군 전남 함평군 경북 봉화군	충북 보은군 전북 장수군 전남 진도군 경북 울릉군
자치구	구-(1)	서울 성북구 서울 강서구 서울 송파구	서울 노원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강동구	서울 은평구 서울 관악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서초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남구
	구-(2)	서울 종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중구 서울 중랑구 서울 금천구	서울 용산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동작구	서울 성동구 서울 도봉구	서울 광진구 서울 서대문구
	구-(3)	부산 진구 대구 북구 인천 연수구 광주 서구 울산 남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울산 북구	부산 사하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부산 강서구 인천 중구 인천 계양구 대전 서구	대구 동구 인천 남구 인천 서구 대전 유성구
	구-(4)	부산 중구 부산 남구 부산 사상구 광주 동구 울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북구 대구 중구 광주 남구 울산 동구	부산 동구 부산 금정구 대구 서구 대전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연제구 대구 남구 대전 중구	부산 동래구 부산 수영구 인천 동구 대전 대덕구

※ 2015년 재정분석종합보고서 |표 IV-32|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